

관세법 일부 제정 · 개정사항 안내 (2022.1.1.시행)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1.1.부터 관세탈루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내용의 일부가 제정 ·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주요 개정 사항

1. 부당 과소신고된 세액의 보정신청 혜택 배제

- 종전에는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보정이자만 부과되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 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관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의2 (보정)</p> <p>①~④ (생략)</p> <p>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2. (생략)</p> <p>〈신설〉</p>	<p>제38조의2 (보정)</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 ----- 때에는 제 42 조에도 불구하고 ----- ----- -----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제 1항과 제 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p>

2.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

- 물가·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가산세) ①~④ (생략)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 1항 제2호 가목 및 제 3항 제2호 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⑦ (생략)	제42조(가산세)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가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 1항 제2호 가목 및 제 3항 제2호 가목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⑦ (현행과 같음)

3.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

- 민간항공기 협정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89조(세울불균형물품의 면세) ①~⑤ (생략) ⑥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에서 제1항제1호의 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관세를 감면한다.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 2019년 5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 100% -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80%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60%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40%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 2. (생략) ⑦~⑧ (생략)	제89조(세울불균형물품의 면세) ①~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 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100% -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80%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60% -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40% -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20% 2. (현행과 같음) ⑦~⑧ (현행과 같음)

4.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사유 신설하여 환급 대상을 확대함.

현 행	개 정 안
<p>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p> <p>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1. 2. (생략)</p> <p><u><신 설></u></p> <p>② 여행자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③ (생략)</p>	<p>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p> <p>①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u></p> <p>② ----- ----- -----.</p> <p>1. <u>제1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안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u></p> <p>2. <u>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u></p> <p>③ (현행과 같음)</p>

5.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

-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함.

현 행	개 정 안
<p>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p> <p>① ~ ② (생략)</p> <p><u><신 설></u></p>	<p>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240조의 3을 준용한다.</u></p>

6.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보류 근거 마련

-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p>제237조(통관의 보류)</p> <p>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신설></p> <p>5. 6.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37조(통관의 보류)</p> <p>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p> <p>1. ~ 4. (현행과 같음)</p> <p>4의2.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p> <p>5. 6.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II. 시행일

- 이 법령은 **2022.1.1.** 부터 시행함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관세법_개정문, 개정이유

[붙임2] 관세법(신구조문대비표)

| Contact



임지웅 관세사

T 070-4353-5151
E jwim@esein.co.kr



황혜준 관세사

T 070-4353-1597
E hjhwang2@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1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